

광주지방법원 2018. 2. 14 선고 2017가단2285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전남낙농업협동조합

변론 종결2018. 1. 17.

판결 선고2018. 2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1. 7. 14. 접수 제66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망 B의 아들이다.

나. 망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,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의 각 소유자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. 7. 14. 설정계약(채권최고액 5,694만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피고, 이하,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1. 7. 14. 접수 제660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)가 마쳐져있다.

다. 원고는 2014. 5. 12. 망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4. 5. 15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망 B는 2016. 4. 8.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1호증의 1 내지 9, 갑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 원고는 2016. 7. 12. 피고로부터 4,900만원을 대출받아 망 B의 채무 4,380만원을 변제하였다며,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.

2) 피고 피고는 망 B의 2011. 7. 14.자 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2011. 7. 14. 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다른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 각 증거와 을 1, 2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 B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하에 2011. 7. 28. 피고로부터 3,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, 피고는 위 대출금의 만기인 2016. 7. 28.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2016. 12. 29. 신용보증인인 농협중앙회로부터 26,137,173원을 대위 변제받았으나, 위 대출금 원금 3,862,827원과 지연손해금이 상환되지 않은 사실, 이 사건 설정계약서(을2호증)에는 '제1조, 피담보채무 :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', '한정근담보 :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'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담보하는 채무는 2011. 7. 14.자 대출금뿐

아니라 위 2011. 7. 28.자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, 2011. 7. 28.자 대출금 중 원금 3,862,827원과 지연손해금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이상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현

별지